

관광정책과

관광정책과

삼척시 장호비치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6. 08. .
제출자 : 삼척시장

1. 제안이유

장호비치캠핑장 개장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시설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나.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다. 시설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라.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마. 시설의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입법예고(2016.06.21. ~ 2016.07.10.) 결과 : 의견없음
- 나. 비용추계서 : 불임 1
- 다.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 불임 2
- 라. 규제심사 결과 : 불임 3(규제사항 없음)
- 마. 관계법령 : 불임 4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장호비치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

삼척시 장호비치캠핑장 관리·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장호비치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삼척시 장호비치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삼척시 삼척로 2116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료"란 캠핑장에서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시설"이란 별표 1의 모든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삼척시장(이하 "시장"라 한다) 또는 위탁·사용수익허가를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 또는 임대받은 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성수기"란 7월, 8월 중 해수욕장 개장기간을 말한다.
6. "동절기"란 11월에서 2월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7. "비수기"란 성수기와 동절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8. "장기체류자"란 2주일 이상 숙박하는 사람을 말한다.
9. "교류도시"란 삼척시의 국내 및 국외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도시를 말한다.

제4조(관리·운영) ① 시장은 캠핑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여,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 또는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관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 주어서는 안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사전예약) ① 사용자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 1일부터 예약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관리자는 외국인 관광객과 단체 관광객 유치 등 삼척시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통한 사전예약 시설을 일부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예약을 한 캠핑장의 사용권은 사용 당일 교부한다. 다만, 예약 취소분에 한해서는 사용 당일 관리사무소에서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을 예약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지정한 계좌로 기한 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사용료의 납부는 현금, 수표, 신용카드 등으로 이를 결제할 수 있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권을 캠핑장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하고 서식은 별지 1과 같다.

④ 관리자는 사용자의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을 위하여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프로그램 참가비 및 재료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며,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⑤ 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그날 14: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 이며, 퇴실시간 1시간 초과 시 사용료의 10%를, 4시간 초과 시에는 1일 사용료를 각각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에 한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사용료의 100분의 30
2. 폐광지역(태백시, 정선군, 영월군) 주민 : 사용료의 100분의 30
3. 캠핑장 장기체류자 : 사용료의 100분의 30
4. 삼척시 교류도시 주민 :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20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반환)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캠핑장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 3. 예약자가 사용을 취소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사용료 환급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숙박업에 관한 조항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예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9조(요금의 게시 등) 관리자는 사용료 등을 여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1. 시설의 명칭
- 2. 시설의 관리자
- 3. 사용료
- 4. 이용시간
-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시설사용의 제한 · 취소)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1. 시설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유의사항에 불응할 때
- 2. 음주행위 및 고성방가로 시설유지 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때
- 3. 그 밖의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캠핑장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담당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캠핑장 사용자는 별지 2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변상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캠핑장 관리 운영자로부터 원상복구 또는 변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③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일어나는 일체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제13조(보험가입) 시장(위탁운영 시 수탁자)은 캠핑장 운영으로 인한 돌발사고 발생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삼척시 장호비치캠핑장 사용료(제6조 제1항 관련)

□ 시설 사용료

(단위 : 원/1박)

시설별	사용기준	성수기	비수기		동절기	
			주말	평일	주말	평일
일반야영장	1개소/1박	35,000	25,000	20,000	20,000	15,000
오토캠핑장	1개소/1박	40,000	30,000	25,000	25,000	20,000
카라반 캠핑장	2-4인용	1대/1박	120,000	100,000	80,000	60,000
	4-5인용	1대/1박	160,000	120,000	100,000	80,000
스파컨테이너 하우스	1대/1박	180,000	160,000	120,000	120,000	100,000

- ※ 1일 사용시간 : 당일 14:00 ~ 다음날 11:00 기준이며,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1시간초과시 시설사용료의 10%, 4시간 초과시 1일 사용료 추가)
- ※ "성수기"란 7월, 8월 중 해수욕장 개장기간을 말한다.
"동절기"란 11월에서 2월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비수기"란 성수기와 동절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 ※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 (성수기 제외)
- ※ 폐광지역(태백시, 정선군, 영월군) 주민은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 (성수기 제외)
- ※ 장기체류자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 (성수기 제외)
- ※ 삼척시 교류도시 주민은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20 (성수기 제외)
- ※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별표 2]

사용료 환급 기준 (제8조 제2항 관련)

내 용	환급 기준		
	기준	성수기 주중	성수기 주말
예약하고 선납된 경우	사용예정일 10일전/예약 당일 취소	선납금 환급	선납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선납금의 10% 공제 후 환급	선납금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선납금의 30% 공제 후 환급	선납금의 4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선납금의 50% 공제 후 환급	선납금의 6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선납금의 80% 공제 후 환급	선납금의 90% 공제 후 환급
	기준	비수기 주중 (동절기 포함)	비수기 주말 (동절기 포함)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선납금 환급	선납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선납금의 10% 공제 후 환급	선납금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취소/연락없이 불참	선납금의 20% 공제 후 환급	선납금의 30% 공제 후 환급
	예약-선납된 경우로써 현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을 할 수 없거나, 캠핑장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기밀에 관계없이 전액 반납	

※ 공경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참조

[별지 1]

캠핑장 시설 사용권 (제6조 제3항 관련)

<p>No.000 -000001</p> <p>캠핑장시설사용권(원부)</p> <p>•사용료: ₩ (금 원정)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용자 - 주소 : - 성명 : 외 인 •사용자 차량번호 :</p> <p>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p> <p>20 년 월 일</p> <p>삼척시 장호비치캠핑장</p>	<p>No.000 -000001</p> <p>캠핑장시설사용권(사용자보관용)</p> <p>•사용료: ₩ (금 원정)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용자 - 주소 : - 성명 : 외 인 •사용자 차량번호 :</p> <p>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p> <p>20 년 월 일</p> <p>삼척시 장호비치캠핑장</p>
---	---

[별지 2]

사용자 수칙 (제11조 제3항 관련)

이곳에서의 생활을 자연과 함께 하면서 즐기기 위해 이용자 여러분에게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입장
 - o 캠프장의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2. 시설사용료
 - o 시설사용료는 사용료 징수기준에 준하며, 요금은 선불입니다.
3. 사이트
 - o 사이트는 배정된 곳을 사용하여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4. 자동차
 - o 자동차의 출입은 가능한 23:00부터 07:00까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o 장내에서의 차량통행은 서행이며,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o 도로이외에 차량 진입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캠프장 내에서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
5. 소음
 - o 심한 소음은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 o 특별히 허가된 야간오락 장소에서도 23:00부터 07:00까지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o 장속 시간은 21:00부터 07:00까지입니다.
6. 위생
 - o 식수 수도꼭지는 식수만을 공급하며, 다른 용도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o 배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 주시고 풀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됩니다.
 - o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내 놓으셔야 합니다.
7. 동물
 - o 모든 동물은 항상 사람의 감독하에 있어야 합니다.
 - o 동물의 오물 등으로 캠핑장을 더럽혀서는 안되며, 캠핑장내에서 반드시 줄로 매어야 합니다.
8. 화재와 사고
 - o 캠핑장내 녹지와 조경시설 보호를 위하여 함부로 불을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 o 음식의 조리 및 불 사용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 o 캠핑장내 불꽃놀이는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9. 홍보
 - o 캠핑장내에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홍보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o 관리자의 서면 허가 없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10. 유실 또는 피해
 - o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o 시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비용이 청구됩니다.
11. 귀급사태
 - o 위급을 요하는 경우와 호우·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장호비치캠핑장 내 시설물(일반야영장, 오토캠핑장, 카라반, 스톱 컨테이너 하우스, 기타 편의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인부임, 일반운영비
- 삼척시 장호비치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 제4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 추계의 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으로 함
- 장호비치캠핑장 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 인건비 = 71,280천원
 - 운영관리(기간제) : 2,100천원 × 2명 × 12월 = 50,400천원
 - 운영관리(일시사역 인부) : 80천원 × 2명 × 90일 = 14,400천원
 - 보험료(고용주부담분) = 64,800천원 × 10% = 6,480천원
 - 일반운영비 : 166,000천원
 - 공공요금 : 5,000천원 × 12월 = 60,000천원
 - 철도부지 대부료 : 70,000천원 × 1년 = 70,000천원
 - 캠핑장내 운영 소모품 : 1,500천원 × 12월 = 18,000천원
 - 시설장비 유지비 등 : 1,500천원 × 12월 = 18,000천원

나. 추계 결과

- 장호비치캠핑장 운영 연간 소요예산으로는 인건비 71,280천원, 일반운영비 166,000천원으로 총 소요예산은 237,280천원으로 산정함

다. 재원조달 방안

-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는 캠핑장 시설사용료 충당할 예정
 - 연간 시설사용료 수입(연간 가동률 39.5%) = 391,775천원

3. 작성자

작성자	관광정책과 관광정책과장 조인성
연락처	(033) 570-3543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계
세입	391,775	391,775	391,775	391,775	391,775	1,958,875
- 시설 사용료	391,775	391,775	391,775	391,775	391,775	1,958,875
세출	237,280	237,280	237,280	237,280	237,280	1,186,400
- 인건비	71,280	71,280	71,280	71,280	71,280	356,400
- 일반운영비	166,000	166,000	166,000	166,000	166,000	830,000
재원 조달	391,775	391,775	391,775	391,775	391,775	1,958,875
의존 재원	소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계	391,775	391,775	391,775	391,775	1,958,875
	지방세					
	세외수입					
	입장료수입	391,775	391,775	391,775	391,775	1,958,875
지방채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붙임 2】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6A장원삼척043		
정책명	삼척시 장호비치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강원도 삼척시	
	부서명	관광정책과	
	담당자명	김희동	전화번호 033-570-3542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6년 6월 21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관광정책과)	장호비치캠핑장 개장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시설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삼척시 장호비치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에 대한 검토 결과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음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6년 06월 22일 삼척시분석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심근화/033-570-3342) 관광정책과장 귀하		

【붙임 3】

시민중심! 행복삼척



삼척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조례안 규제심사 결과 회신(2016-규제-035)」

1. 관광정책과-8068(2016.6.21.)호의 규제개혁 심사 의견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삼척시 장호비치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 없음"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지역경제과장

수신자 기획감사실장, 관광정책과장

지방행정서기 보	규제개혁담당	지역경제과장	2016. 6. 24.
협조자			
시행	지역경제과-19791	[2016. 6. 24.]	접수 관광정책과-8366 [2016. 6. 24.]
우	25914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고동, 삼척시청)		/ http://samcheok.go.kr/
전화번호	033-570-3552	팩스번호 033-570-3140	/ describe@korea.kr / 대국민 공개

*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태도시 삼척 *

【붙임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관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농정과

농정과

삼척시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6. 08. .
제 출 자 : 삼척시장

1. 제안이유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구 유입을 통한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어업인의 유치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안 제2조 :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 나. 조례안 제3조 : 위원회 설치 및 구성
- 다. 조례안 제4조 ~ 8조 : 위원회 기능, 직무, 운영, 수당, 위원해촉
- 라. 조례안 제9조 ~ 10조 : 귀농인 지원, 귀농인 신고
- 마. 조례안 제11조 : 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 바. 조례안 제12조 ~ 14조 : 지원 취소 및 보조금 회수, 준용, 시행규칙

3. 참고사항

- 가. 입법예고(2016.06.30. ~ 2016.07.19.) 결과 : 의견 없음
- 나. 비용추계서 : 불임 1
-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불임 2
- 라. 규제심사 결과 : 불임 3(규제사항 없음)
- 마. 관계법령 : 불임 4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귀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하고, "어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수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을 말하고, "어업인"이란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을 말한다.
3. "농촌"이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5호의 지역을 말하고, "어촌"이란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의 지역을 말한다.
4. "귀농어업인"(이하 "귀농인"이라 한다)이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던 사람이 농어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어업경영"이란 농어업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어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6. "지원"이란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삼척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제공하는 행·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어기술 등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귀농인의 유치와 지원을 위하여 "삼척시 귀농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 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 경제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또는 해양수산과장
2. 위촉직 위원 :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1명, 생산자 단체 또는 농어업인 단체의 장 4명, 귀농어 또는 농어업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명, 농어업 관련 금융기관 임직원 1명 이내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귀농어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심의
2. 귀농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인의 고충처리 및 귀농지원 대책 협의
4. 지원금의 취소 및 회수에 관한 사항 심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을 작성하여 회의 개회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고,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촉 해제를 할 수 있다.

- 1. 임기 중 사망하거나 부득이한 이유로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할 때
- 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 3. 그 밖에 시장이 품위손상 등 정상적인 위원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9조(귀농인 지원) 시장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할 수 있고, 세부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1. 귀농어업에 필요한 정보제공
- 2. 영농어업 기술 습득, 농어업현장 연수, 실습지원 등 농어업 경영 관련 교육·훈련
- 3. 귀농인 농업 창업자금 및 주택자금 융자 지원사업
- 4. 귀농인 소득창출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지원사업
- 5. 귀농인 정착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
- 6. 각종 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지원사업

제10조(귀농인 신고) ① 귀농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귀농인 신고서를 시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귀농인 신고 대상은 시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이며, 세대주가 신고인이 된다.

③ 귀농인은 신고 당시 연령이 만 60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제11조(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① 시장은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지원이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하게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취소 및 보조금 등의 회수) 시장은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귀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귀농인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시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 5. 그 밖에 시장이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준용)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귀농(어)업인 신고서

1. 인적사항

가구주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소(거주지)	(전)			
	(현)	주택	유·무	
영농경력	년	귀농어교육실적	분야(시간)	
가족사항	명(전입 기준)	귀농어 일자	년 월 일	
		귀농어진 직업	(근무처)	
연락처	휴대전화 :		일반전화 :	

2. 농업경영계획

영농어분야 (작목)	현재의 영농규모 / 급후계획	소유농지,어선 (임대농지)	비고

※ 귀촌의 경우 전입 후 사업계획을 간단하게 기술

3.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삼척시 귀농어업인 지원조례 제10조에 따라 위 내용과 같이 귀농(어)신고 합니다.

- 귀농(어)신고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귀농(어)신고와 관련된 고유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귀농(어)신고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삼척시장 귀하

【붙임 1】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조문 : 삼척시 귀농어업인 지원조례 제9조
- 내용 :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초기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용자지원을 할 수 있고 세부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① 귀농어에 필요한 정보제공
 - ② 영농어기술 습득, 농업현장 연수, 실습지원 등 농업경영 관련 교육·훈련
 - ③ 귀농어업 창업자금 및 주택자금 용자 지원사업
 - ④ 귀농인 소득창출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지원사업
 - ⑤ 귀농인 정착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
 - ⑥ 각종 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용자 지원사업

2.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비용 : 매년 200백만원
 - 내용 : 귀농어업인의 농어촌 정착지원 및 농어업·농어촌 동반성장을 위한 육성 지원사업비
- 나. 추계 결과 : 별첨
- 다. 재원조달 방안
 - 국·도비의 매칭비율에 의한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금
 - 지원사업별 매칭비율에 의한 시 예산지원 및 자체 지원 보조금

3. 작성자

작성자	삼척시 농정과장 김 경 수
연락처	(033) 570 - 341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계	
세입	-	-	-	-	-	-	
세출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사업비보조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재원 조달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의존 재원	소계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국비보조금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도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자체 수입	소계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지방세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금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붙임 2】

시민중심! 행복삼척



삼척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치법규(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통보 (2016A강원삼척044)

1. 농정과 -6925(2016. 6.23.)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하신 「삼척시 귀농어업인 지원조례」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하오니, 그 반영계획서를 2016. 7. 1.(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영계획서 제출방법 (GIA 시스템)

1. 나의페이지 > 나의할일 > 분석평가대기 > 나의과제 - 검토의견통보서의 상태값인 [통보(개선)] 클릭
2. 검토의견통보서의 개선의견 내용을 확인 후 오른쪽 하단의 「반영계획서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반영 계획 및 결과 작성 후 저장
3. 저장 버튼 오른쪽의 기안 버튼을 클릭하여 체크리스트(분석평가서) 기안 단계와 동일한 방식으로 기안 결재 진행

※ 시스템 사용 문의 :

GIA시스템 콜센터 (T. 1566-3287 또는 02-3789-4450)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2016A강원삼척044) 1부. 끝.

사회복지과

수신자 기획감사실장, 농정과장

주무관 여성가족담당, 경로복지담당 2016. 6. 24.

합조자

시행 사회복지과-38565 [2016. 6. 24.] 접수 농정과-7023 (2016. 6. 24.)

우 25914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고동, 삼척시청) / http://samcheok.go.kr/

전화번호 033-570-3342 팩스번호 033-570-3138 / ghs1120@korea.kr / 비공개(5)

*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태도시 삼척 *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6A강원삼척044		
정책명	삼척시 귀농어업인 지원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강원도 삼척시	
	부서명	농정과	
	담당자명	박지영	전화번호 033-570-338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6년 6월 24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농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도시와 농어촌의 동반성장과 농업·농촌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위원회 설치 및 구성 - 귀농인지원, 귀농인 신고 - 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등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input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의 정책결정과정 에 참여를 확대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촉직 위원의 경 우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음 o 따라서 삼척시 귀농어업인 지원조례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구 성)③에 성별균형 참여를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조 항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음 (예시 : 2. 위촉직위원 :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농(어)업관련 금융 기관 임직원 1명 이내중,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o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2016년 7월 1일 까지 		
<p>『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p> <p>2016년 06월 24일</p> <p>삼척시분석평가책임관</p> <p>(담당자/연락번호 : 심근화/033-570-3342)</p> <p>농정과장 귀하</p>			

【붙임 3】

시민중심! 행복삼척



삼척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조례안 규제심사 결과 회신(2016-규제-036)

1. 농정과-6925(2016.6.23.)호의 규제개혁 심사 의뢰건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삼척시 귀농어업인 지원조례』 제4조(2)에 대한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 없음"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지역경제과장

수신자 기획감사실장, 농정과장

지방행정서기 보	규제개혁담당	지역경제과장	2016. 6. 28.
협조자			
시행 지역경제과-20066	(2016. 6. 28.)	접수 농정과-7117	(2016. 6. 28.)
우 25914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교동, 삼척시청)	/ http://samcheok.go.kr/	
전화번호 033-570-3552	팩스번호 033-570-3140	/ describe@korea.kr	/ 대국민 공개

*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태도시 삼척 *

【붙임 4】

관 계 법 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업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업인(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정보 제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1조(귀어업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어업인(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정보 제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축산과

축산과

삼척시 농업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융자금 이차보전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6. 08. .
제 출 자 : 삼척시장

1. 제안이유

삼척시 농업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농업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융자금의 이차 일부를 시비로 보전하여 농가의 경영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나. 이차보전 지원대상 및 사업 규정(안 제3조)
- 다. 이차보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안 제4조)
- 라. 이차보전을 및 기간, 지급방법, 시기에 관한 규정(안 제5조~6조)
- 마. 이차보전을 위한 금융기관과의 협약체결 규정(안 제7조)
- 바. 이차보전금 반환 및 지원증지에 관한 규정(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입법예고(2016. 06. 01. ~ 06. 24.) 결과 : 불입 1
-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불입 2
-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불입 3(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 의견 반영)
- 라. 규제심사 결과 : 불입 4(규제사항 없음)
- 마. 관계법령 : 불입 5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농업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융자금 이차보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융자금 이차보전금의 일부를 시비로 보조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4. "보조사업자"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5. "이차보전금"이란 농업인이 대출기관에서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보조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사업) ① 이차보전금 지원대상은 삼척시에 1년 이상 주된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 시행자로 한다.

1. 축사, 농업시설 및 농경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업
 2. 그 밖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업
- ② 시장은 이차보전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에서 심의한다.
-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경제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감사실장, 농정과장, 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 1. 농협시지부장
- 2. 농업, 축산업 대표 각 1명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삼척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이차보전을 및 기간) ① 이차보전은 대출금리의 50퍼센트 이하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할 수 있는 금리 한도는 3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업에 따른 이차보전금의 농가당 지원 가능금액은 연 9백만원 이하로 한다.

③ 이차보전 지원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급방법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대출 금융기관은 매 분기말 대출 내역을 시장에게 통보하고, 시장의 이차보전금 내역 조회 의뢰가 있을 경우 개인별 납부하여야 할 이차보전금 내역을 확인하여 통지한다.
- 2. 시장은 대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 분기말 대출 내역을 통보받아 매 연말 이차보전금 내역을 대출 금융기관에 조회한 후 12월 30일까지 대출 금융기관에 지급한다.

제7조(협약체결)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이차보전금 및 납부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대출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8조(이차보전금 반환 및 지원증지)이차보전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 2. 농업인이 농축산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 3. 그 밖에 사업 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및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 입법예고 자치법규명 : 삼척시 농업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자금 이차보전에 관한 조례안

의견 제출자	제출의견 및 사유	조치 사항
미래전략과 이정수	○ 제출의견 → 조례안 제3조(지원대상 및 사업) ①이차보전금 ----- 1.축사 및 농업시설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사업 2.그 밖의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사업 ○ 사유 - 지원대상자가 농업인으로 농경지 제외시 형평성 결여로 추가필요 - 보급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급하는 사업이므로 "보급"용어는 삭제 필요	○ 반영 - 농경지 추가 - 보급 삭제 ○ 수정사항 → 조례안 제3조(지원대상 및 사업) 1.축사 및 농업시설, 농경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업 2.그 밖의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업
의회사무과 정재영	○ 제출의견 → 조례안 제목을 '삼척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자금 이차보전에 관한 조례'에 농업시설이라는 단어를 추가 ○ 사유 - 농업시설에 한정해야함. 일반시민 요구시 예산 감당이 안됨	○ 반영 - 농업시설 삽입 ○ 수정사항 → 조례안 제목 변경 - 삼척시 농업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자금 이차보전에 관한 조례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및 사유	조치 사항
농정과 이동규	○ 제출의견 → 조례안 제5조(이차보전을 및 기간) ①이차보전율은 대출금리의 50퍼센트 이하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이차보전 지원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대출금리 한도를*3%이하로 정함 ○ 사유 - 향후 대출금리 인상시 시비 부담 우려됨으로 한도를 3퍼센트 이하로 한다. 로 신설 필요 - 이차보전을 위한 한도 금액이 없을 경우 시비 부담금액의 과다소요 발생예상으로 ②항신설	○ 반영 - 한도를 3퍼센트 이하로 추가 - ②항 신설 ○ 수정사항 → 조례안 제5조 ① ---- 다만 지원할 수 있는 금리 한도는 3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업에 따른 이차보전금의 농가당 한도 금액은 연 9백만원 이하로 한다 ③이차보전 지원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4조(시책과장려 등)
 -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장려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 나. 삼척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지원조례 제3조(책무)
 -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라. 삼척시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지원조례 제3조 제3항(육성시책)
 - 시는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소득증대 및 보급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2.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체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융자금 이차보전금의 일부를 시비로 보조지원 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함.

나. 추계결과

- 향후 5년간 총 소요예산(50동) : 1,200,000천원
- 연도별 소요예산 현황
 - 1차년도 : 6,000천원 × 30동 = 180,000천원
 - 2차년도 : 6,000천원 × 35동 = 210,000천원
 - 3차년도 : 6,000천원 × 40동 = 240,000천원
 - 4차년도 : 6,000천원 × 45동 = 270,000천원
 - 5차년도 : 6,000천원 × 50동 = 300,000천원

* 산출근거

- 1동 × 40kw × 3,000,000원 × 0.05% = 6,000,000원
- 1동 330㎡ 기준 태양광발전소 설비 규모 : 40kw
- 시설비(1kw) : 3,000천원 1동(40kw)시설비:120,000천원
- 동당 이차보전금 연간 소요액 : 6,000천원
- 금융기관 대출융자금 이율 연 5%인 경우, 대출기간 5년

다. 재원조달 방안

- 시비, 민간자본 조달

3. 작성자

작성자	측산과 측산과장 임 순 간
연락처	(033) 570-343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계	
세 입							
세 출	180,000	210,000	240,000	270,000	300,000	1,200,000	
측사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사업	180,000	210,000	240,000	270,000	300,000	1,200,000	
재원 조달(100%)	180,000	210,000	240,000	270,000	300,000	1,2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50%)	소 계	90,000	105,000	120,000	135,000	150,000	600,000
	지방세	90,000	105,000	120,000	135,000	150,000	60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50%)	90,000	105,000	120,000	135,000	150,000	600,000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계							

【붙임 3】

시민중심! 행복삼척



삼척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치법규(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통보 (2016A강원삼척036)

1. 축산과 - 5805(2016. 5. 4)호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하신 「삼척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자금 이차보전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하오니, 그 반영계획서를 2016. 5. 18(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영계획서 제출방법 (GIA 시스템)

1. 나의페이지 > 나의할일 > 분석평가대기 > 나의과제 - 검토의견통보서의 상태값인 [통보(개선)] 클릭
2. 검토의견통보서의 개선의견 내용을 확인 후 오른쪽 하단의 「반영계획서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반영 계획 및 결과 작성 후 저장
3. 저장 버튼 오른쪽의 기안 버튼을 클릭하여 체크리스트(분석평가서) 기안 단계와 동일한 방식으로 기안 결재 진행

※ 시스템 사용 문의 :

GIA시스템 콜센터 (T. 1566-3287 또는 02-3789-4450)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2016A강원삼척035) 1부. 끝.

사회복지 ~~기획~~지과장

수신자 기획감사실장, 축산과장

주무관 여성가족담당 대령 2016. 5. 11.

업조차

시행 사회복지과-29371 (2016. 5. 11.) 접수 축산과-6008 (2016. 5. 11.)

우 25914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교통, 삼척시청) / http://samcheok.go.kr/

전화번호 033-570-3342 팩스번호 033-570-3138 / ghs1120@korea.kr / 대국민 공개

*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태도시 삼척 *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6A강원삼척036		
정책명	삼척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자금 이차보전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강원도 삼척시	
	부서명	축산과	
	담당자명	유은지	전화번호 033-570-3393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6년 5월 4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축산과)	농업·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설비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용자금 이자의 일부를 시비로 보조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input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의견 <input type="checkbox"/>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를 확대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따라서, 삼척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자금 이차보전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위원회는... 위촉직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중 성비를 고려하여 위촉한다)성별균형 참여를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음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2016년 5월 18 일 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2016년 05월 11일 삼척시 분석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심근화/033-570-3342)</p> 축산과장 귀하		

【붙임 4】

시민홍보실 홍보실장



삼 척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조례안 규제심사 결과 회신(2016-규제-030)」

1. 축산과-5802(2016.5.4.)호의 규제개혁 심사 의뢰건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삼척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자금 이차보전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 없음”**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5】

지역경제과장
수신자 기획감사실장, 축산과장

지영행정서기	규제개혁담당	지역경제과장	2016. 5. 18.
합조자			
시영 지역경제과-15518	(2016. 5. 18.)	집수 축산과-6393	(2016. 5. 18.)
우 25914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교동, 삼척시청)	/ http://samcheck.go.kr/	
전화번호 033-570-3552	팩스번호 033-570-3140	/ describe@korea.kr	/ 대한민국 공개

* 시립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태도시 삼척 *

관계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 가. 농업: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농업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수소에너지
 - 나. 연료전지
 - 다.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 라.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 2.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태양에너지
 - 나. 풍력
 - 다. 수력
 - 라. 해양에너지

- 마. 지열에너지
 -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 사. 폐기물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 아.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4.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 5.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건축과

건축과

삼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6. 08. .
제 출 자 : 삼척시장

1. 제안이유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한 녹색건축물에 대한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에 대해 완화기준을 정함(안 제3조제8항 신설)
- 나. 미관지구내 건축물의 건축위원회 심의제도가 시행령에서 삭제됨에 따라 폐지(안 제6조제1항제5호 삭제)
- 다. 가설건축물 중 천막 구조물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20제곱미터 이하의 비상업적 정자를 가설건축물에 추가(안 제22조제3항제2호 개정 및 제8호 신설)
- 라.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감리 비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안 제23조의2 신설)
- 마. 도시의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를 전면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한 법 제60조제3항이 삭제됨에 따라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조항 폐지(안 제39조 삭제)
- 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 상호간의 대지의 구역을 지정·공고하도록 시행령제86조제2항제1호에서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한 사항 폐지(안 제40조제2항 삭제)
- 사. 건축협정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 및 자원에 관한 사항 중 건축조례로 정

- 하는 사항을 정함(안 제41조제2항~제4항 및 안 제41조의2 신설)
- 아. “공작물 축조 신고대상인 저장시설에 대한 규모 등이 제시되지 않아 소 규모 시설도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국무조정실 제시)”에 대하여 높이 6미터 이상인 저장시설 등에 대해서만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도록 하여 공작물 축조신고대상 범위를 축소하여 기업경제활동 불편해소(안 제42조제1항제3호)
- 자. 이행강제금 부과비율을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완화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을 따로 정함(안 제43조의2 신설)
 -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5
 -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 차. 이행강제금을 감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3년)을 정하고, 감경 받을 수 있는 위반행위 및 감경비율을 정함(안 제43조의3 신설)

3. 참고사항

- 가. 입법예고(2016.05.04. ~ 2016.05.24.) 결과 : 의견없음
- 나. 비용추계서 미검부사유서 : 불임 1
-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불임 2(영향없음)
- 라. 규제심사 결과 : 불임 3(규제사항 없음)
- 마. 관계법령 : 불임 4
- 바. 삼척시 지방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 원안가결(2016.6.22.)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 및 에너지 효율인증 등급을 획득한 건축물과 제로에너지 빌딩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9를 적용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 1.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 2.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6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22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판매, 휴식 및 운동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천막 구조물

제22조제3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벽은 없고 기둥과 지붕만 있는 정자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연면적 20 제곱미터 이하인 비상업적 건축물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건축물의 공사감리) 「건축법」 제25조제11항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강원도건축사회 삼척지역건축사회회장(이하 “건축사회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24조제5항 중 “「건축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강원도건축사회 삼척지역건축사회회장(이하 “건축사회장”이라 한다)”를 “건축사회장”으로 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방안
 3. 도로, 주차장 등 공유인 부대시설 관리 방안
 4. 그 밖의 건축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③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는 점유권자, 압류권자에 한한다.
- ④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지 상호간의 지반높이 등 대지조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도로 등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영 제110조의5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설계도서
2.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3.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에 대한 명세
4. 그 밖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 이와 유사”를 “그 밖에 이와 비슷”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유사”를 각각 “비슷”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시멘트저장용싸이로”를 “높이 6미터 이상인 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싸이로”로, “유사”를 “비슷”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상2층 이상인 건축물”을 “건

축물”로, “8세제곱미터 이상인 수조”를 “30톤 이상인 물탱크·냉각탑”으로, “유사”를 “비슷”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영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
4. 법 제35조에 따른 유지·관리 상태가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6. 법 제62조에 따른 건축설비의 설치·구조에 관한 기준과 그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법령 등의 기준을 위반한 건축물

제43조제3항 중 “법 제80조제4항”을 “법 제80조제5항”으로 한다.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5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제43조의3(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3년을 말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에 입주자 공유의 관리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 개정규정은 최초로 고시가 있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의 완화) ① ~ ⑦ (생략)	제3조(적용의 완화)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설>	⑧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 및 에너지 효율인증 등급을 획득한 건축물과 제로에너지 빌딩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9를 적용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2.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6조 (건축위원회의 기능) ① 영 제5조의 5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제정(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1. ~ 4. (생략) 5. 미관지구 내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영 제3조의2제7호에 따른 대수선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중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을 제외한 용도로 그 규모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 대상 건축물	제6조 (건축위원회의 기능) ① ----- ----- ----- 1. ~ 4. (현행과 같음)
6. ~ 10. (생략)	6. ~ 10.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가설건축물) ①·② (생략)	제22조(가설건축물)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15조제5항제15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③ ----- -----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생략)

2. 판매 및 휴식 등을 목적으로 천막과 파이프 등 경량자재를 사용하여 설치하는 구조물

3.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천막등조립, 해체가 용이한 창고와 폐수처리시설 및 공해배출 기계장치의 보호를 위하여 설치하는 천막과 유사한 용도의 구조물

4. ~ 7. (생략)

<신설>

④ (생략)

<신설>

제24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 ① ~ ④ (생략)

⑤ 시장은 「건축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강원도건축사회 삼척지역건축사회장(이하 "건축사회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 명부를 작성한다.

⑥·⑦ (생략)

제39조(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 법 제60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들 이상의 도로(교통광장을 포함한다)에 접하는 경우에 전면도로의 너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1. 대지둘레길이의 8분의1 이상 접한 도

1. (현행과 같음)

2. 판매, 휴식 및 운동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천막 구조물

<삭제>

4. ~ 7. (현행과 같음)

8. 벽은 없고 기둥과 지붕만 있는 정자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비상업적 건축물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건축물의 공사감리) 「건축법」 제25조제11항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강원도건축사회 삼척지역건축사회장(이하 "건축사회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24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건축사회장 -----

⑥·⑦ (현행과 같음)

<삭제>

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하되, 대지둘레길이의 8분의1 이상 접한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2. 제1호의 도로보다 너비가 더 넓은 도로에 접한 부분은 해당 도로의 너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법 제60조제3항제2호에 따라 대지에 접한 공원·광장·하천·월도·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공공공지(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가 있는 경우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의 건축물에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③ 법 제60조제3항제3호에 따라 건축협정 인가를 받은 대지의 경우 협정인가 대상 대지의 전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한다.

④ 법 제60조제3항제4호에 따라 대지가 막다른 도로의 끝부분에 접한 경우 막다른 도로의 끝으로부터 해당 막다른 도로의 너비에 상당하는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40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생략)

② 영 제86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전용 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 ⑥ (생략)

제41조(건축협정의 체결)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기존 건축물이

제40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현행과 같음)

<삭제>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41조(건축협정의 체결) ① -----

밀집되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신 설>

②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 2.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방안
- 3. 도로, 주차장 등 공유인 부대시설 관리 방안
- 4. 그 밖의 건축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 설>

③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는 점유권자, 압류권자에 한한다.

<신 설>

④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대지 상호간의 지반높이 등 대지조성에 관한 사항
- 2. 그 밖에 도로 등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

<신 설>

제41조의2(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영 제110조의5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설계도서
- 2.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 3.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에 대한 명세
- 4. 그 밖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제42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싸이로를 포함한다), 유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제42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 (시멘트저장용싸이로를 포함한다), 유회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 1. 제조시설 : 레미콘제조시설,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2. 운반시설 : 벨트콘베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3.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시멘트저장용싸이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4. ~ 6. (생략)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지상2층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8세제곱미터 이상인 수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43조(이행강제금) ① (생략)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 설>

- 1. (생략)
- 2. (생략)
- 3. (생략)

<신 설>

<신 설>

- 4. (생략)

1. -----
비슷-----

2. -----
--- 비슷-----

3. ----- 높이 6미터 이상인 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싸이로-- 비슷--

4. ~ 6. (현행과 같음)

② -----
----- 건축물
-- 30분 이상인 물탱크·냉각탑 -----
----- 비슷-----

제43조(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

② -----

1.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영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

- 2. (현행 제1호와 같음)
- 3. (현행 제2호와 같음)
- 5. (현행 제3호와 같음)

4. 법 제35조에 따른 유지·관리 상태가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6. 법 제62조에 따른 건축설비의 설치·구조에 관한 기준과 그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법령 등의 기준을 위반한 건축물

7.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4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를 1년에 1회로 하고 총 부과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④ (생략)

<신설>

<신설>

③ ----- 법 제 80조제5항 -----

④ (현행과 같음)

제43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 1. 판매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 2. 유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5
-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제43조의3(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3년을 말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에 입주자 공유의 관리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붙임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삼척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건축과 건축과장 김진석
연락처	(033) 570 - 3404

【붙임 2】

시민중심! 행복삼척



삼척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치법규(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통보 (2016A강원삼척033)

1. 건축과-12548(2016. 4. 21.)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하신 「삼척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은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례나 규칙, 제명 및 문구 등 단순 변경에 해당하므로, 제출하신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사회복지과장 *김미경*

수신자 기획감사실장, 건축과장

주무관 여성가족담당 사회복지과장 전송 2016. 4. 25.

협조자

시행 사회복지과-26127 (2016. 4. 25.) 접수 기획감사실-5451 (2016. 4. 25.)

우 25914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교동, 삼척시청) / <http://samcheok.go.kr/>

전화번호 033-570-3342 팩스번호 033-570-3138 / ghs1120@korea.kr / 대한민국 공개

*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태도시 삼척 *

【붙임 3】

시민중심! 행복삼척



삼척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조례안 규제심사 결과 회신(2016-규제-025)

1. 건축과-12283(2016.4.19.)호의 규제개혁 심사 의뢰건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삼척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규제심사 결과 "규제 사항 없음"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지역경제과장 *김영진*

수신자 기획감사실장, 건축과장

지방행정사기 보 규제개혁담당 지역경제과장 2016. 4. 25.

협조자

시행 지역경제과-12818 (2016. 4. 21.) 접수 기획감사실-5335 (2016. 4. 21.)

우 25914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교동, 삼척시청) / <http://samcheok.go.kr/>

전화번호 033-570-3552 팩스번호 033-570-3140 / descibe@korea.kr / 대한민국 공개

*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태도시 삼척 *

【붙임 4】

관계 법령

□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㉔ 허가권자는 제11항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삭제 <2015.05.18>

제77조의4(건축협정의 체결) ⑤ 소유자등이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축협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9. 그 밖에 건축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80조(이행강제금)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내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축사 등 농업용·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홍행, 진압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2. 불꽃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와 대지 사이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

나.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구역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10조의3(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3.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 중 그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

② 법 제77조의4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9. 그 밖에 건축물의 위치, 용도, 형태 또는 부대시설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10조의5(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협정인가권자가 법 제77조의11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구역 안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한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 또는 법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운영회(이하 "건축협정운영회"라 한다)의 대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요구할 수 있다.

5.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의2, 제4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되,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1. 전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② 법 제80조제2항에서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7. 그 밖에 위법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100분의 50
 - 2. 제1항제7호의 경우: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
- 제118조 (옹벽 등의 공작물예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4>
-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회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제15조(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②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는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제14조제1항 또는 제1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 1.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15 이하
 - 2.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100분의 115 이하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고시의 범위에서 건축기준 완화 기준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보건정책과

보건정책과

삼척시 음식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6.08. .
제 출 자 : 삼척시장

1. 제안이유

자동차를 이용한 식품영업(푸드트럭영업)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의 관련 별표 15의2 제9호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음식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영업장소를 규정함(안 제2조)
- 다. 첨부서류를 규정함(안 제3조)
- 라.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 가. 입법예고(2016.07.15. ~ 2016.08.04.)결과 : 의견없음
-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불입 1
-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불입 2(영향없음)
- 라. 규제심사 결과 : 불입 3(규제사항 없음)
- 마. 관계법령 : 불입 4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음식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지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영업장소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4. 그 밖에 삼척시장이 음식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시설
 -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사람(이하 “시설운영자” 라 한다)이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 2.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 3.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사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 4. 제2조제4호에 따른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삼척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보건정책과 보건정책과장 박 흥 식
연락처	(033) 570 - 4620

【붙임 2】

시민중심! 행복삼척



삼척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차지법규(조례)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통보 (2016A강원삼척048)

1. 보건정책과-17946(2016. 7. 18.)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하신 「삼척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2016A강원삼척048) 1부, 끝.

삼척시



수신자 기획감사실장, 삼척시보건소장(보건정책과장)

주무관 여성가족담당 사회복지과장 2016. 7. 18.
참조자
시행 사회복지과-43413 (2016. 7. 18.) 접수 보건정책과-17999 (2016. 7. 18.)
우 25914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교통, 삼척시청) / http://samcheok.go.kr/
전화번호 033-570-3342 팩스번호 033-570-3138 / ghs1120@korea.kr / 대국민 공개
*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태도시 삼척 *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6A강원삼척048		
정 책 명	삼척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강원도 삼척시	
	부서명	보건정책과	
	담당자명	이희숙	전화번호 033-570-3322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6년 7월 18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보건정책과)	「삼척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은 영업지정 장소를 조례로 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삼척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 결과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음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6년 07월 18일			
삼척시분석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심근화/033-570-3342)			
보건정책과장 귀하			

【붙임 3】

시민중심! 행복삼척! 안전도시 삼척!



삼척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조례안 규제심사 결과 회신(2016-규제-040)」

- 1. 보건정책과-17693(2016.7.14.)호의 규제심사 요청건 관련입니다.
- 2. 위호와 관련, 「삼척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규제사항 없음"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지역경제과장

수신자 기획감사실장, 삼척시보건소장(보건정책과장)

주무관 규제개혁담당 지역경제과장 2016. 8. 5.

참조자

시행 지역경제과-24901 (2016. 8. 5.) 겸수 보건정책과-19748 (2016. 8. 5.)

우 25914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교동, 삼척시청) / http://samcheok.go.kr/

전화번호 033-570-3552 팩스번호 033-570-3140 / descibe@korea.kr / 대국민 공개

*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태도시 삼척 *

【붙임 4】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4항 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13. 생략
- 1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를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의결과

회계과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6. 8. .

제 출 자 : 삼척시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삼척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제4차 수시분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삼척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유재산의 효율적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1. 제안사유

- 공설묘지 2단지 조성공사에 따른 진입로 인근부지를 매입하여 진입로주변의 환경정비와 주차장을 조성하여 중추절 성묘객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장사시설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현재 지역 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를 매입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공원조성사업 일환으로 운동기구 설치 및 주차편의 공간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함.
- 2016년 강원대학교 신축기숙사가 완공되어 2학기 이주됨에 따라 7월부터 세룸아파트 104동 60세대가 강원대학교로부터 반환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일반분양 하여 도계 지역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고 시세정 확충에도 기여하고자 함.

2. 대상 재산현황

(단위 : 면적/㎡, 금액/천원)

구분	사업명	대상 재산						추진부서
		구분	소재지	지목 (구조)	지적 (수량)	취득 (연면적)	기준가격 (공시지가)	
취득	삼척공설묘지 2단지 진입로 및 주차장 매입	토지	등봉동 302	대	1,121	1,121	81,048	사회복지과
취득	국유 일반재산 (토지) 취득	토지	근덕면 용화리 479-5	전	3,502	3,502	25,880	회계과
처분	새롬아파트 104동 60세대 매각(분양)	건물	도계읍 도계리 429	철근콘크리트	60세대	60세대	6,537,720	건축과

3. 기대효과

- 진입로주변의 환경정비와 주차장을 조성하여 중추절 성묘객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장사시설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
- 공원조성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 및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토지를 사전 확보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시유재산의 자산가치 증가 효과 기대
- 지역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주거공간을 공급하여 주택난을 해결하며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고 분양이 완료되면 6,537,720천원의 수입확보로 다양한 예산운용 가능

- 붙임 : 1.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괄표 1부
 2. 삼척공설묘지 2단지 진입로 및 주차장 편입부지 매입계획 1부
 3. 국유 일반재산 취득계획 1부
 4. 새롬아파트 104동 60세대 매각(분양)계획 1부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분	당 초			증 감			합 계			비고	
	간수	수량	금액	간수	수량	금액	간수	수량	금액		
계	토지	11	21,860.31	329,304	2	4,623	106,928	13	26,483.31	436,232	
	건물	12	596.56	58,484				12	596.56	58,484	
	기타	5	5식	1,705,450				5	5식	1,705,450	
매입	토지	9	15,696.11	256,209	2	4,623	106,928	11	20,319.11	363,137	
	건물	12	596.56	58,484				12	596.56	58,484	
	기타										
교환 취득	토지										
	건물										
	기타										
기타 취득 (신축)	토지	2	6,164.2	73,095				2	6,164.2	73,095	
	건물										
	기타	5	5식	1,705,450				5	5식	1,705,450	
계	토지										
	건물				1	60세대	6,537,720	1	60세대	6,537,720	
	기타										
매각	토지										
	건물				1	60세대	6,537,720	1	60세대	6,537,720	
	기타										
양여	토지										
	건물										
	기타										
교환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삼척공설묘지 2단지 진입로 및 주차장 매입계획

공설묘지 2단지 조성공사에 따른 진입로 인근부지를 매입하여 진입로주변의 환경정비와 주차장을 조성하여 중추절 성묘객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장사시설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I 관련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 2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2015. 9)

II 매입재산의 현황

(단위 : m², 천원)

구분	토지 및 건물현황				취득면적	기준가격 (공시지가)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토지	등봉동	302	대	1,121	1,121	81,048	신**

III 현 이용실태

- 마을석재 토지로 활용되고 있음

IV 취득사유 및 활용계획

- 진입로주변의 환경정비와 주차장을 조성하여 중추절 성묘객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 장사시설 이용객들의 편의를제공하고자 함.

V 행정절차 관련법 검토

-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 대상
 -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 제5조제1항제1호
-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의결 : 대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

VI 향후 추진계획

- 삼척공설묘지 2단지에 지구내에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과 아울러 진입로 정비 및 주차장으로 활용코자함
 - 사업기간 : 2016. 9월~12월

□ 위치도



국유 일반재산(토지) 취득 계획

- 회계과-16698(2015.09.21.)호 및 산림녹지과-9316(2016.06.20.)관련
- 현재 지역 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를 매입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공원조성사업 일환으로 운동기구 설치 및 주차편의 공간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함

I 관련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4조(2016. 8.)

II 취득 재산의 현황

(단위: m², 천원)

구분	토 지 현 황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공시지가)	소 유 자
	소 계 지	지 번	지 목	지 적			
토지	근덕면 용화리	479-5	전	3,502	3,502	25,880 (7,390원)	국 (기획재정부)

III 현 이용실태

-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 479-5번지(전) 3,502m²
 - 지역 주민들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쉼터 및 주차편의 공간 활용
 - 개인 사유지 임야(산)의 송이 및 산나물 채취를 위한 진출입로로 이용
 - 마을안길 도로 협소로 차량 진출입시 차량 교행장소로 이용

IV 취득사유

-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쉼터공간 및 주차편의 공간으로 활용중인 국유지를 매입하여
- 지역 주민들 및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생활건강을 위한 공원조성일환 으로 운동기구 설치 및 주차편의 공간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 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토지를 사전 확보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시유재산의 자산가치 증가 효과 기대

V 행정절차 관련법 검토

□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 기 완료(2015. 10. 05.)

- 삼척시공유재산관리조례 : 제5조제2항제3호
- ⇒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의결 :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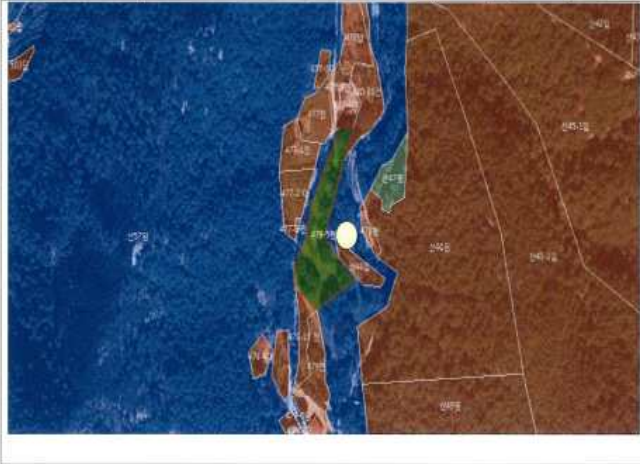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
- ⇒ 1건당 취득 토지면적이 1,000m² 이상인 경우

VI 향후 추진계획

-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회) ----- 2016.08월
- 2017년 당초 예산확보 ----- 2016.11월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요청 ----- 2016.12월
- 국유재산 매입 ----- 2017.2~3월
- 공원조성추진(산림녹지과) ----- 2017.3월 ~

붙임 : 지적도면 및 위치도(전경사진) 각 1부. 끝.

○ 지적도면(삼척시 근덕면 용화리 479-5번지/ 전 / 3,502㎡)



○ 위치도(항공사진)(삼척시 근덕면 용화리 479-5번지/ 3,502㎡)



○ 토지 전경사진(아래쪽/하단부분)



○ 토지 전경사진(위쪽/상단부분)



새롬아파트 104동 매각(분양) 계획

- 2016년 강원대학교 신축기숙사가 완공되어 2학기 이주됨에 따라 7월부터 새롬아파트 104동 60세대가 강원대학교로부터 반환됨
- 이에 따라 새롬아파트 104동 60세대를 지역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일반분양 하여 도계 지역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고 시제정 확충에도 기여하고자 함.

I 관련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삼척시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3조

II 매각 재산의 현황

- 소재지 :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429번지
- 매각재산 : 새롬아파트 104동 60세대(세대 당 108.738㎡)
- 재산가액 : 6,537,720천원(60세대 총 분양금액)
- 매각시 세대 당 분양가 : 108,962천원
- 매각재산 세부현황 (단위:㎡)

유형별	세대 수	세대별 주택공급면적(㎡)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면적	비고
		공급면적(B)		기타 공용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78형	60	78.810	17.053	95.863	2.627	10.248	108.738	54.349	반환 (104동)

III 현 이용실태

- 강원대학교로부터 반환되어 현재 공가 세대

IV 매각사유

- 지역주민들의 주거복지 향상 및 시제정 확충

V 행정절차 관련법 검토

-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 대상
-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 제5조제1항제1호
-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의결 : 대상
-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 제12조제1항

VI 향후 추진계획

- 입주자모집 공고 : 2016년 07월
- 새롬아파트 104동 보수공사 : 2016년 07월 ~ 08월
- 분양 홍보 : 2016년 07월 ~
- 입주예정일 : 2016년 09월 ~

□ 단지 조감도 및 전경사진



층 200세대 55형 20세대 78형 180세대 (금회 60세대 분양)

